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㉾04427 서울 용산구 이촌로46길 37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42/전송(02)793-8702
의무법제국 국장 곽석철(6573) **의무팀장** 김철욱(6542) 팀원 김경덕(6582) E-mail : kam008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21 - 09081호

시행일자 2026. 11. 11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령(제2171호) 개정·공포 알림(식품의약품안전처)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-9907(2026.11.10.)

3.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「약사법」 개정(법률 제21109호, 25.11.11.공포, 26.11.12. 시행)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협의회의 협의 대상 의약품을 정하고,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이 사업 관련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을 포함한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령(제2171호)이 2026년 11월 10일자로 개정·공포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,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개정된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은 2026.11.10.자 관보,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붙임
1.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.
2.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령(제2171호)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